



규정

교육시설 관리 규정


문서번호	TWP-A165
제정일자	2012. 07. 27.
개정일자	2026. 20. 20.
개정번호	3
페이지	1/5

목 차

- 1. 총 칙
- 2. 운영관리
- 3. 유지관리
- 4. 기록관리
- 5. 보 칙
- 부 칙
- 별 첨

작성부서	사무처 시설과	제정일자	2012. 07. 27.
------	---------	------	---------------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직 책	담당					총 장
서 명						
일 자						

	규정	문서번호	TWP-A165	
		제정일자	2012. 07. 27.	
	교육시설 관리 규정	개정일자	2026. 20. 20.	
		개정번호	3	페이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이하 “우리 대학”이라 한다)의 각종 교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이용 편의성과 안전을 도모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 대학 각종 교육시설 안전관리, 유지보수, 개선 절차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시설”이라 함은 건물 및 그 부속시설로서 건축물과 냉난방·환기·급배수·전기·정보통신·소방·승강설비, 교내 도로·주차장·운동장·조경시설 등 내·외부 시설물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포함한 모든 설비를 말함
2. “건물”이라 함은 우리 대학의 부지 내에 건설하여 사람이 거주하거나 그 밖의 목적에 쓰이는 공간을 구성하는 물체를 말함
3. “교육시설 보수자”라 함은 교육시설 유지, 보수 및 관리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계약을 맺고 교육시설을 보수하는 자를 말함


제2장 운영관리

제4조(구성 및 업무) ① 교육시설 관리의 주관부서는 사무처 시설과로 하며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용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2. 교육시설 이력관리
3. 교육시설 내·외부 위험요소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 실시와 위험요소 제거 활동
4. 교육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에 관한 기술적 지원 및 관리

② 학생운영 및 편의시설, 연구 및 실습시설은 각 관련 해당 부서장 및 학과장이, 그 외의 기타 교육시설은 사무처장이 관리의 책임을 갖는다. 시설 관리에 관한 실무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제5조(교육시설 안전관리, 유지보수, 개선 등 계획수립) 교육시설 관리 주관부서는 매년 교육시설 유지, 보수에 관한 법정 점검 및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규정	문서번호	TWP-A165
		제정일자	2012. 07. 27.
	교육시설 관리 규정	개정일자	2026. 20. 20.
		개정번호	3

제6조(교육시설 관리대장 작성) 신축건물 완공 후 해당분야 준공검사를 담당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교육시설 관리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물의 교육시설 관리대장 세부항목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3장 유지관리

제7조(교육시설 안전관리) 교육시설 보수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기 또는 관리계획에 따른 주기에 따라 안전 및 사용에 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 “교육시설 점검 및 정비일지”를 작성하여 교육시설 점검, 정비 및 안전에 관한 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시설 유지보수, 개선) 교육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해당부서에서 유지보수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무처에 협조를 요청하며, 사무처에서는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예산, 설계 등 필요한 제반조치 시행
2. 학사운영을 위해 필요하거나 안전관리에 문제가 예상될 때는 해당부서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도 제1호의 절차를 준용하여 시행
3. 교육시설 설치 및 보수 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감독 실시

제4장 기록관리


제9조(교육시설 관리) ① 해당 교육시설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집행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교육시설 보수 이력카드”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단, 우리 대학 직원이 자체 보수한 것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안전과 직결되는 경우에는 기재할 수 있다.

② [별지 제1호 서식] “교육시설 관리대장”과 [별지 제3호 서식] “교육시설 보수 이력카드”를 참조하여 차기년도 유지보수 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제5장 보칙

제10조(관련법령) 이 규정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3. 기타 교육시설 관련 규정

	규정		문서번호	TWP-A165
			제정일자	2012. 07. 27.
	교육시설 관리 규정		개정일자	2026. 20. 20.
			개정번호	3

제11조(장애인 교육시설 관리) 모든 교육시설 관리에 장애인 교육시설도 포함되며 동일하게 보수 및 관리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종전 “시설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관리대장 및 점검일지는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 첨

- [별지 제1호 서식] 교육시설 관리대장
- [별지 제2호 서식] 교육시설 점검 및 정비일지
- [별지 제3호 서식] 교육시설 보수 이력카드

[별지 제1호 서식] 교육시설 관리대장

교육시설 관리대장

교육시설명		주용도				기타용도				
층수						최고층고				
지상 (옥탑제외)	옥탑	지하	최고높이			높이	해당층			
구조종류				지정형태		기초형식				
기초밑면 깊이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 연면적		건폐율	용적율	
주차 시설	주차면적	옥내 주차면적	옥외 주차면적	주차대수	옥내 주차대수	옥외 주차대수	일시최대 사용인원	1일 사용인원		
설 비	환기(공조) 방식	배기덕트 유무	물탱크 위치	변전실 위치	유류저장 시설위치	오수정화 시설위치	승강기대수			
							승객용	화물용	비상용	
	중앙냉방				중앙난방			전기인입용량		
	냉방유무	냉방열원			난방유무		난방열원			
정화조 형식				건물유지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부대시설	승강기 운영방식			
기타상세제원										

[별지 제2호 서식] 교육시설 점검 및 정비일지

교육시설 점검 및 정비일지

날 짜	분 야	항 목	세 부 내 용	비 고

